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1. 2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11. 23.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5. 11. 24.
- 다. 상정일자 :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05.12.16)
상정, 심사, 보류
제11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6.1.20)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4.12.23) 및 동법 시행령(2005.6.23)이 개정되어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허가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세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등 생활형 업소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시 광고물등의 설계도서·설명서, 원색사진 및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제출을 면제토록함.(안 제2조)

- 허가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세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등 생활형 업소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의 연장과 광고내용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현행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 표시금지 물건에 “가로등 점멸기함과 낙석방지시설” 을 추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 구청장이 관할구역내에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
- 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9조)
 - ① 건물 출입구 양측 기둥에 표시하는 경우
 - 각 각 1개만 표시하며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2미터 이내로 표시(안전을 위하여 전기사용을 금지)
 - ② 4층이상에 가로형간판이 부착되지 않은 건물 측·후면에 표시하는 경우
 - 가로 3미터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2이내로 최대 30미터 이내
-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0조)
 - ① 하나의 게시시설에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을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시설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각각 연립형으로 표시할 수 있음.
 - ② 게시시설 규격 : 가로는 당해 건물의 가로폭 이내로서 최대 30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1/2 이내로서 최대 8미터 이내. 단, 창문간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는 창문간 벽면폭의 80퍼센트 이내.

- ③ 지주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표시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네온류 및 전광류에 의한 점멸 또는 화면변화 특성이용방식 사용불가

○ 현수막의 표시방법(안 제12조)

- ① 현수막은 신고하여 검인을 받은 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벽면, 지주, 지정게시대)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식의 조명 및 네온·전광류를 이용하는 보조 조명장치 사용불가

② 건물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음식점 건물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 할 수 있음.
-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하되 표시면적은 225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 게시시설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벽면 높이 이내로서 최대 52미터 이내로 최고 3개 까지 설치 가능.

③ 지주이용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기준

- 단일형 : 가로 1.5미터 이내, 높이 4미터 미만,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 수량 15개 이내의 게시시설에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180센티미터 이내의 현수막 설치
- 연립형 : 가로 5미터 이내, 높이 4미터 미만,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50센티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에 동시에 5개 이내의 현수막 설치.

○ 창문이용 광고물(안 제17조)

① 건물의 창문과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

- 건물 3층 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만 표시하여야 함.

- 광고물 규격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을 50센티미터 이하로 표시하여야 함

② 건물내부에 설치하여 건물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

- 건물의 1층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전광류 등 전기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가로는 2미터, 세로는 50센티미터 이내로서 표시면적은 0.4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안 제18조)

-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전용주거지역·일반 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주거 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전기사용등을 제한할 수 있음.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 절차 및 그 기준을 정함(안 제20조)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등을 정함(안 제21조 및 22조)

○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 및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24조 및 25조)

○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준수사항 등을 정함.(안 제31조~제33조)

○ 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를 정함.(안 제34조~제36조)

3.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4.12.23 법률제7246호)과 동법 시행령(2005.9.30 대통령령제19073호)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가 모두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서 영 제7조 등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공연광고물, 돌출광고물 및 옥상광고물 등 생활형업소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설계도서와 설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옥상광고물 등 생활형업소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의 연장과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6조에서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및 지상 변합기함, 맨홀·공동구·방음벽 등, 도로(인도 포함)의 노면 등으로 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지 않은 가로등자동정렬기함과 낙석방지시설물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8조 내지 안 제19조에서는 법령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세로형광고물, 공연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현행 서울시 관련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20조에서 구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옥외광고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시설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도록 하였음.

안 제21조 및 22조에서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광고물 등에 광고주를 위한 표시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과 영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 위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23조 내지 안 제27조에서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광고물 중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로 규정하였고,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과 검사인력·시설·장비의 기준을 규정하였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4.12.23 법률제7246호)과 동법 시행령(2005.9.30 대통령령제19073호)의 개정으로 종전의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사무가 시·군·구의 업무로 일원화되었음.
-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가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동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 안 제2조제1항 제1호 중 가로형 광고물과 공연광고물, 제2호 중 돌출광고물, 제3호 중 옥상광고물, 제5항제2호 중 옥상광고물, 제5조제1항 제1호 중 가로형광고물, 제2호 중 돌출광고물, 제3호 중 옥상광고물, 제4호 중 지주이용광고물, 동조 제2항제1호 중 가로형광고물, 제2호 중 돌출광고물, 제3호 중 옥상광고물, 제4호 중 지주이용광고물 등에 규정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의 약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들 ‘광고물’은 각각 ‘간판’으로 하고, 안 제9조 중 “세로형광고물”은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17조제2항 중 “영 제30조제2항”은 영 제30조제3항에서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영 제30조 제3항”으로 수정이 필요함.

안 제21조제2항 중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는 “광고물관리심의 소위원회”로 용어를 정정하고, 동항 제2호 중 “위원수의 과반수”는 영 제33조제2항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를 준용하여 ”위원수의 반수 “로 수정을 요함.

[별표7]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란 제1호 가목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중 연면적 3.0제곱미터 초과시 과태료 금액은 “80만원+3제곱미터 초과면적 0.5제곱미터 당 10만원 가산” 으로 규정하였으나 영 제46조제4항 관련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 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조례의 관련 규정이 동법시행령과 상충되는 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별표7] 제1호 가목 (2)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중 연면적 3.0제곱미터 초과시 과태료금액 50만원+3제곱미터 초과면적 0.5제곱미터 당 5만원 가산, 나목 (1)표시면적에 따른 부과기준 중 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시 과태료금액 50만원+1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별표8]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 위반사항란 1. 가로형·세로형·공연간판·창문이용광고물 중 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200만원+2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 당 10만원 가산, 2. 돌출간판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200만원+2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3.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200만원+1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형 가로형간판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300만원+5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8.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에서 가목 (1)무인비행선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시 이행강제금 금액 150만원+1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가목 (2)유인비행선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시 이행강제금 금액 200만원+1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나목 그 밖의 교통수단 중 연면적 5.0제곱미터 초과시 이행강제금 금액 50만원+5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등의 규정은 영 제46조제4항 및 영 제47조제1항 별표의 규정에 맞도록 각각 수정하고, 또한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 시공업소란 중 “주민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숙지하고 조례를 적용하기 바람.
- 답변요지(박도식 도시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6. 1. 20.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동조례(안) 일부조항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가. “가로형 광고물”을 “가로형 간판”으로, “세로형 광고물”을 “세로형 간판”으로, “공연 광고물”을 “공연 간판”으로, “돌출 광고물”을 “돌출 간판”으로, “옥상 광고물”을 “옥상 간판”으로, “지주이용 광고물”을 “지주이용 간판”으로 함.(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24조)

나. “영 제30조제2항”을 “영 제30조제3항”으로 함.(안 제17조제2항)

다.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로, “위원수의 과반수”를 “위원수의 반수”로 함.(안 제21조 제2항)

라. [별표7]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과 [별표8]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 기준중 일부 과태료 금액 및 이행강제금 금액 조정

마.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심의 신청서의 시공업소 인적사항 기재란중 “주민번호”을 “주민등록번호”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로 한다.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24조 중 “가로형 광고물” 을 “가로형 간판” 으로, “세로형 광고물” 을 “세로형 간판” 으로, “공연 광고물” 을 “공연 간판” 으로, “돌출 광고물” 을 “돌출 간판” 으로, “옥상 광고물” 을 “옥상 간판” 으로, “지주이용 광고물” 을 “지주이용 간판” 으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 중 “영 제30조제2항” 을 “영 제30조제3항” 으로 한다.

안 제21조제2항 중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 를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 로 하고, “위원수의 과반수” 를 “위원수의 반수” 로 한다.

[별표7]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제1호가목(1)의 연면적 3.0제곱미터 초과 과태료금액란중 “10만원” 을 “9만원” 으로, 동호동목(2)의 연면적 3.0제곱미터 초과 과태료금액란중 “5만원” 을 “4만원” 으로, 동호나목(1)의 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과태료금액란중 “10만원” 을 “9만원” 으로 한다.

[별표8]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제1호의 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이행강제금금액란중 “10만원” 을 “9만원” 으로, 제2호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이행강제금금액란중 “10만원” 을 “9만원” 으로, 제3호의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이행강제금금액란중 “10만원” 을 “9만원” 으로, 제4호의 연면적 50.0

제공미터 초과 이행강제금금액란중 “10만원” 을 “9만원” 으로, 제8호가목(1),(2)의 이행강제금 금액란 후단에 “(500만원 이하)” 를 각각 신설하고, 동호나목 연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이행강제금 금액란 중 “5만원” 을 “4만원” 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심의 신청서의 시공업소 인적사항 기재란중 “주민번호” 을 “주민등록번호”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p> <p>제2조(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등)①(생략)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u>가로형광고물 및 공연광고물</u>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u>돌출광고물</u>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u>옥상광고물</u>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4.~10.(생략) ②~④(생략) ⑤(생략) 1.(생략) 2. _____ <u>옥상광고물</u> _____ ⑥(생략)</p> <p>제5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 ①(생략) 1. _____ <u>가로형광고물</u> 2. _____ <u>돌출광고물</u> _____ 3. _____ <u>옥상광고물</u> _____ 4. _____ <u>지주이용 광고물</u> 5.~10.(생략)</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p> <p>제2조(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등)①(원안과 같음) 1. _____ _____ <u>가로형간판</u> 및 <u>공연간판</u> 2. _____ <u>돌출간판</u> _____ _____ 3. _____ <u>옥상간판</u> _____ _____ _____ 4.~10.(원안과 같음) ②~④(원안과 같음) ⑤(원안과 같음) 1.(원안과 같음) 2. _____ <u>옥상간판</u> _____ ⑥(원안과 같음)</p> <p>제5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 ①(원안과 같음) 1. _____ <u>가로형간판</u> 2. _____ <u>돌출간판</u> _____ 3. _____ <u>옥상간판</u> _____ 4. _____ <u>지주이용 간판</u> 5.~10.(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②(생략)</p> <p>1. -----가로형광고물</p> <p>2. ----- 돌출광고물 -----</p> <p>3. ----- 옥상광고물 -----</p> <p>4. ----- 지주이용 광고물</p> <p>5.~8.(생략)</p> <p>제9조(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 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u>세로형광고물</u>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①(생략)</p> <p>②-----가로형광고물-----</p> <p>1.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u>가로형광고물</u> -----,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u>가로형광고물</u> ----</p> <p>2.~5.(생략)</p> <p>③~④(생략)</p> <p>제17조(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생략)</p> <p>②영 제30조제2항의 -----</p> <p>③(생략)</p> <p>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생략)</p> <p>②영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u>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u>(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생략)</p> <p>2. -----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p> <p>3.~5.(생략)</p> <p>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p> <p>1. -----공연광고물 -----</p> <p>2.~5.(생략)</p>	<p>②(원안과 같음)</p> <p>1. -----가로형간판</p> <p>2. ----- 돌출간판 -----</p> <p>3. ----- 옥상간판 -----</p> <p>4. ----- 지주이용 간판</p> <p>5.~8.(원안과 같음)</p> <p>제9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p> <p>----- 세로형간판-----</p> <p>-----</p> <p>①(원안과 같음)</p> <p>②-----가로형간판-----</p> <p>1.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u>가로형간판</u> -----,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u>가로형간판</u> -----</p> <p>2.~5.(원안과 같음)</p> <p>③~④(원안과 같음)</p> <p>제17조(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원안과 같음)</p> <p>②영 제30조제3항-----</p> <p>③(원안과 같음)</p> <p>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원안과 같음)</p> <p>②-----</p> <p>-----<u>광고물관리소심의소위원회</u>-----</p> <p>-----</p> <p>1.(원안과 같음)</p> <p>2. -----</p> <p>-----<u>위원수의 반수</u>-----</p> <p>-----</p> <p>3.~5.(원안과 같음)</p> <p>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p> <p>1. -----공연간판 -----</p> <p>2.~5.(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별표 7]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제35조제항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제35조제항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1.(생략)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30제곱미터초과 · 80만원3제곱미터초과면적 05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30제곱미터초과 · 50만원3제곱미터초과면적 05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나. 현수막 (1) 표시면적에 따른 부과기준 · 면적 10.0제곱미터초과 · 50만원1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2) (생략) 다.~라.(생략)		1.(원안과 같음) 가. ——— (1) ——— ——— · ——— · ——— ——— 9만원 — (2) ——— ——— · ——— · ——— ——— 4만원 — 나. ——— (1) ——— · ——— · ——— ——— 9만원 — (2) (원안과 같음) 다.~라.(원안과 같음)	
2.(생략)		2.(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별표 8]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8]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금액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금액
1. 가로형·세로형·공연간판·창문이용광고물 · 면적20.0제곱미터초과	· 200만원+2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u>10만원</u> 가산	1. _____ _____	_____
2. 돌출간판 · 연면적 20.0제곱미터초과	· 200만원+2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u>10만원</u> 가산	2. _____	_____
3.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연면적 10.0제곱미터초과	· 200만원+1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u>10만원</u> 가산	3. _____	_____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형 가로형간판 · 연면적 50.0제곱미터초과	· 300만원+5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u>10만원</u> 가산	4. _____	_____
5. ~7. (생략)		5. ~7. (원안과 같음)	_____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1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4.12.23) 및 동법 시행령(2005.6.23)이 개정되어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가. 허가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세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등 생활형 업소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시 광고물등의 설계도서·설명서, 원색사진 및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제출을 면제토록함.(안 제2조)

나. 허가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세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등 생활형 업소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의 연장과 광고내용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현행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 표시금지 물건에 “가로등 점멸기함과 낙석방지시설”을 추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라. 구청장이 관할구역내에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7조)

마. 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9조)

(1) 건물 출입구 양측 기둥에 표시하는 경우

- 각 각 1개만 표시하며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2미터 이내로 표시(안전을 위하여 전기사용을 금지)

(2) 4층이상에 가로형간판이 부착되지 않은 건물 측·후면에 표시하는 경우
- 가로 3미터이내, 세로 건물높이의 1/2이내로 최대 30미터 이내

바.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0조)

(1) 하나의 게시시설에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을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시설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각각 연립형으로 표시할 수 있음.

(2) 게시시설 규격 : 가로는 당해 건물의 가로폭 이내로서 최대 30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1/2 이내로서 최대 8미터 이내. 단, 창문간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는 창문간 벽면폭의 80퍼센트 이내.

(3) 지주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표시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네온류 및 전광류에 의한 점멸 또는 화면변화 특성이용방식 사용불가

사. 현수막의 표시방법(안 제12조)

(1) 현수막은 신고하여 검인을 받은 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벽면, 지주, 지정게시대)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식의 조명 및 네온·전광류를 이용하는 보조 조명장치 사용불가

(2) 건물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음식점 건물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 할 수 있음.

-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하되 표시면적은 2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게시시설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벽면 높이 이내로서 최대 52미터 이내로 최고 3개 까지 설치가능.

(3) 지주이용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기준

- 단일형 : 가로 1.5미터 이내, 높이 4미터 미만,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 수량 15개 이내의 게시시설에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180센티미터 이내의 현수막 설치

- 연립형 : 가로 5미터 이내, 높이 4미터 미만, 현수막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50센티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에 동시에 5개 이내의 현수막 설치.

아. 창문이용 광고물(안 제17조)

(1) 건물의 창문과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

- 건물 3층 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만 표시하여야 함.

- 광고물 규격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을 50센티미터 이하로 표시하여야 함

(2) 건물내부에 설치하여 건물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

- 건물의 1층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전광류 등 전기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가로는 2미터, 세로는 50센티미터 이내로서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안 제18조)

-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전기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차.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절차 및 그 기준을 정함(안 제20조)

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등을 정함(안 제21조 및 22조)

타.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 및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24조 및 25조)

파.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준수사항 등을 정함. (안 제31조~제33조)

하. 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함. (안 제34조~제36조)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 제7246호, 2004. 12. 23)
-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868호, 2005.6.2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05.10.27~ 11.16, 20일간)결과 특이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5.11.21)
- (3)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부
-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등) ①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도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거나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광고물 및 공연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들출광고물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5.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표시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영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영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9.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등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광고물등
- ②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원색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2.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③동일한 원색도안으로 2건 이상의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원색도안을 첨부할 수 있다.
- ④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거나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은 그 내용을 상징하는 원색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⑤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 심의관련 서류

2.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과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⑥구청장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 및 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하단 여백에 별표 1에 의한 점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등) ①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 또는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 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신고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원색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광고물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 광고물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8. 영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영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10.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게시시설
- ②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신고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원색도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광고물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 광고물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8. 영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중 영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설치 또는 표시(이하 "표시"라 한다)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및 지상 변압기함
2. 맨홀·공동구·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3. 공사장 등의 울타리 및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4. 횡단보도 안전표시등·가로등 자동점멸기함 및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7.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7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에 관한 내용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8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추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건물 등의 벽면이나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면이나 건물 등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①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 기둥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의 광고물등을 각각 하나씩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광고물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서는 입체형으로 된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광고물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광고물이 표시된 벽면에는 4층 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벽면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가로길이는 3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서 최대 30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광고물등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광고물등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③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상표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1업소에서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광고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 등의 벽면 또는 당해 건물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연간판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간판에 대하여는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등의 벽면에는 하나의 게시시설에 현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에 관하여 연립형(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물에 2개 이상 업소의 광고물을 각각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게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가로길이는 당해 업소의 가로폭(당해 업소의 좌·우측 양쪽 기둥의 폭을 제외한다) 이내로서 최대 30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서 최대 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창문간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길이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폭의 8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광고물등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광고물등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③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보도 또는 차도와 가장 가까운 광고물등의 끝부분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공연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표시면적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부지내에 2업소 이상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방법 중 빛이 점멸하거나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옥상간판(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간에는 5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은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점인을 받아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설치한 게시시설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여야 한다.
2.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있는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의 규격에 따르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게시시설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신고가 취소된 현수막 및 훼손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게시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하여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 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하여는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구청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음식점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 하되, 표시면적은 2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게시시설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벽면높이 이내로서 최대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출입문·창문·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5.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 전체에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은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줄로 나란히 설치하여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 또는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주유소·가스충전소 건물, 음식점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부지안에 설치하되 단일형과 연립형 중 하나의 형태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형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1.5미터 이내(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다), 높이는 4미터 미만으로서 현수막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 게시시설은 최대 15개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5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라. 현수막의 가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80센티미터 이

내이어야 한다.

3. 연립형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5미터 이내, 높이는 4미터 미만으로서 현수막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게시시설은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부지내에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현수막은 동시에 5개 이내의 범위내에서 게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규격은 가로 8미터 이내, 높이 7.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1업소당 하나의 현수막을 15일 이내로 게시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연속하여 게시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3.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최소 45미터)

터) 이상일 것

- ②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③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신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벽보는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벽보판에만 게시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른다.
- ②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2조제4항제3호·제4호의 규정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게시하는 벽보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 등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의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

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휴지통

2. 벤치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과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창문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당해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각 2분의1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을 50센티미터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을 20센티미터 이하로 표시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업소 광고물등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②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1층 이하의 옥내에 설치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옥외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길이는 2미터 이내, 세로길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회수가 1분에 20회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로 보지 아니한다.
 3. 영 제31조제4항제3호 및 이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 을 위한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에 관한 사항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적용 하지 아니한다.
- ③창문이용광고물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있는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 또는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가축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 ②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각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등은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 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시정·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의뢰하

는 사항을 각각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에 관한 내용
- 2.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옥외광고시설물의 명칭·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1.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3인 이상
- 2. 5평 이상의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⑥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⑦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폐·계침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및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광고물등에 광고주를 위한 표시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위치 결정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신규 허가에 관한 사항.
 - 가.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과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
 - 나.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하면서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등으로서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
 5. 기타 구청장이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⑤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안전도검사)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결과(불합격 판정을 받은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도검사에 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원을 그 소속 공무원 중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광고물 중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게시시설 중 표시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게시시설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정게시대
3. 영 제4조제1항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및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판류형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9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광고물
5. 그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등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등)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의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

②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3인 이상
2. 5평 이상의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안전도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 하는 자에게 별표 2에 의한 안전도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 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①수탁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등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 중 표시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인 광고물등

제28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반환 등) ①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그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 할 수 없는 광고물이나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고물등을 제거한 취지
2.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3. 광고물등을 폐기처분한 경우 그 사유

②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게시판 또는 구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규격·표시내용·수량
2. 위반장소·위반사항 및 관련규정
3. 광고물등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4. 보관일시·보관장소 및 취급자 등
5.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③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를 기록·관리함에 있어 행정처분 자료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영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및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 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2조(교육업무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위탁기

간 및 수탁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교육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①수탁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제3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또는 교육실시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수탁자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수탁자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은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수탁자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5,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당해 업무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목격자 찾기, 미아찾기 등 시민의 편익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
2.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제35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 영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함에 있어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징수부로 영 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영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으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제2조제6항 관련)

신고번호 :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 표 시 기 간 >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현 수 막 : 가로 12센티미터 이상, 세로 8센티미터 이상

○벽보·전단 : 가로 5센티미터 이내, 세로 3센티미터 이내

※다만, 압인·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안전도검사원증 (제26조제4항 관련)

- 규 격 : 가로 6.5센티미터, 세로 9센티미터
- 바탕색 : 연녹색
- 글자색 : 검정색

<앞 면>

안전도검사원증

사 진
(3.5×4.5)

(성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뒷 면>

No.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자격기간 :)

상기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이장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국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 (제31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교육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규 - 4시간 ◦색채, 디자인, 도시미관 등 - 1시간 ◦설계, 제작, 시공, 구조안전 등 - 2시간 ◦종사자의 자세 -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 	※종사 전에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 신고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규 - 3시간 ◦종사자의 자세 - 1시간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규 - 2시간 ◦색채, 디자인, 도시미관 등 - 1시간 ◦종사자의 자세 -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함.			

[별표 4]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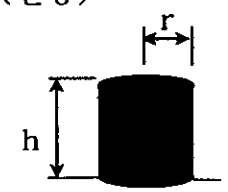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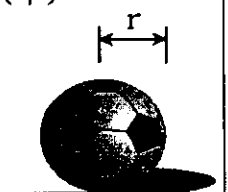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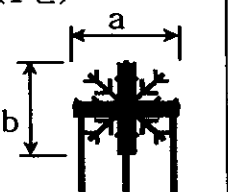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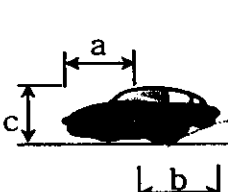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
1. 가로형·세로형간판	가. 일반 간판 (가로형·세로형간판)	개	·6제곱미터이하	4,000
		m ²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
나. 건물 측후면 4층이상 의 판류형간판 (영 제15조제4호)	의 판류형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5제곱미터이하	5,000
		개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0,000
		개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40,000
		m ²	·20제곱미터를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2. 돌출간판	돌출간판	개	·1제곱미터이하	10,000
		개	·1제곱미터초과 3.5제곱미터이하	20,000
		개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30,000
		m ²	·10제곱미터를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것 에 한함)	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기간연장,기타변경 나. 내용변경	개	·해당 광고물(벽면·지주)에 준함	5,000
4. 옥상간판	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이하	50,000
		개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100,000
		개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200,000
		m ²	·40제곱미터를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5.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개	·1제곱미터이하	5,000
		개	·1제곱미터초과 5제곱미터이하	10,000
		개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0,000
		m ²	·1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의 면적	2,000
		m ²	·40제곱미터를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		개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옥상간판에 준함	20,000
7.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 m ² 개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0개이하 ·20개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15,000 10,000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개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15,000 20,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열차자동차선박 항공기		대 대 m ²	·1.5제곱미터이하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500,000 2,000 2,000
10. 선전탑		개		20,000
11. 아취광고물		개		20,000
12. 창문이용광고물		개		20,000
13.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주이용 현수막 다. 지정계시대 현수막 라. 현수막 게시시설		개 m ² 개 개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를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4분의 1	20,000 1,000 2,000 10,000
14. 벽보		매	·20매이하 ·20매초과 50매이하 ·50매초과시 50매까지 1매당 가산	5,000 10,000 10,000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
15. 전단		매	·매1,000매까지	5,000
16. 광고물의 게시시설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에 준함	
17. 주소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2항)		건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함	5,000
18.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		건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함	30,000
19. 기타광고물 가. 차량탑재영상광고 나.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다. 깃발이용광고 라. 기타종류의 광고물			·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준함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 허가신고 수수료 산정방법

(1) 허가신고 수수료는 광고면(향후 광고표시가 가능한 광고 미표시면을 포함한다)과 그 테두리를 포함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로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면적을 산정한다.

(원통)	(구)	(1면)	(입체모형)
			
$S=2\pi rh$	$S=4\pi r^2$	$S=(ab)\times 70\%$	$S=(2ac+2bc)\times 70\%$

※참고 : S=면적의 합, $\pi=3.14$, r=반지름, h=높이.

- (2) 산정된 표시면적에서 0.5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다만, 산정된 표시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내부에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외부에 노출되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일반수수료 산정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광고물등에 직접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간접조명의 경우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수수료 계산식>

A : 총 면적에 대한 일반수수료 산정액	구 분	계 산 식
B : 전기를 이용하는 면적	내부조명	$A \times \{1 + (B/C \times 0.5)\}$
C : 총 면적	외부조명	$A \times (1 + B/C)$

- (4) 광고물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분의1 을 경감하며, 하나의 광고물등에 대하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중 가장 중한 1건의 수수료만을 징수한다.
- (5)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광고 미표시면에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징수하고, 규격·사용자재·위차·장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 (6)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 (7)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따로 받은 게시시설에 규격·사용자재·위차·장소 등의 변경 없이 광고내용을 신규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1/2을 징수한다.

[별표 5]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 분	단 위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영 제15조제4호),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영 제23조제2항)	개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22,000
	개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45,000
	m ²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들출간판	개		·연면적 3.5제곱미터이하	15,000
	개		·연면적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2,000
	m ²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높이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영 제23조제3항)	개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15,000
	개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22,000
	m ²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4. 현수막 게시시설	개		·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22,000
	개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미터이하	45,000
	m ²		·연면적 8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5. 기타 광고물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등에 준함	

※ 안전도검사 수수료 산정방법

(1)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단순지주와 돌출광고물의 연결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광고물등의 단면적의 합(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벽면 또는 시설물 등에 문자형·입체형·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하여 계산된 면적의 70퍼센트를 적용하며, 그 외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면적산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p>(2면)</p>	<p>(입체모형)</p>	<p>(4면)</p>
$S=(2ab) \times 70\%$	$S=(2\pi rh + \pi r^2) \times 70\%$	$S=(2ac) + (2bc)$

(2) 그 외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 2]의 (2)~(6)를 준용한다.

[별표 6]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 (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수 료
신 규	업 소 당	15,000
변 경	업 소 당	7,500

[별표 7]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지면 등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등)·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8만원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0.8제곱미터미만	·13만원
·연면적 0.8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19만원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1.3제곱미터미만	·25만원
·연면적 1.3제곱미터이상 1.6제곱미터미만	·30만원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39만원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3제곱미터미만	·45만원
·연면적 2.3제곱미터이상 2.6제곱미터미만	·60만원
·연면적 2.6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79만원
·연면적 3.0제곱미터	·80만원
·연면적 3.0제곱미터초과	·80만원+ 3제곱미터초
	과면적 0.5제곱미터
	당 10만원 가산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5만원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0.8제곱미터미만	·7만원
·연면적 0.8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9만원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1.3제곱미터미만	·15만원
·연면적 1.3제곱미터이상 1.6제곱미터미만	·20만원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29만원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3제곱미터미만	·35만원
·연면적 2.3제곱미터이상 2.6제곱미터미만	·40만원
·연면적 2.6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49만원
·연면적 3.0제곱미터	·50만원
·연면적 3.0제곱미터초과	·50만원+ 3제곱미터초
	과면적 0.5제곱미터
	당 5만원 가산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p>나. 현수막</p> <p>(1) 표시면적에 따른 부과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1.0제곱미터미만 ·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면적 3.0제곱미터이상 3.7제곱미터미만 ·면적 3.7제곱미터이상 4.4제곱미터미만 ·면적 4.4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면적 6.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면적 8.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면적 10.0제곱미터 ·면적 10.0제곱미터초과 <p>(2) (1)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 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0만원+ 10제곱미터초 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배적용
<p>다. 벽보(전단의 규격을 초과하는 것)</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장 ·11~20장 ·21장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장 ·11~20장 ·21장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당 1만원 ·장당 1만5천원 ·장당 2만5천원 ·장당 1만5천원 ·장당 2만원 ·장당 3만원
<p>라. 전단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의 것)</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장 ·11~20장 ·21장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장 ·11~20장 ·21장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당 5천원 ·장당 1만원 ·장당 1만5천원 ·장당 1만5천원 ·장당 2만원 ·장당 3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 4] 의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별표 8]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제36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1. 가로형·세로형·공연간판·창문이용광고물	
·면적 2.0제곱미터미만	·20만원
·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30만원
·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40만원
·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5만원
·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55만원
·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65만원
·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75만원
·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85만원
·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95만원
·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145만원
·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165만원
·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185만원
·면적 20.0제곱미터	·200만원
·면적 20.0제곱미터초과	·200만원+ 2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2. 돌출간판	
·연면적 2.0제곱미터미만	·20만원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30만원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40만원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9만원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55만원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65만원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75만원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85만원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95만원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연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170만원
·연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190만원
·연면적 20.0제곱미터	·200만원
·연면적 20.0제곱미터초과	·200만원+ 2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가산
3.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30만원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35만원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40만원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48만원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3.5제곱미터미만	·55만원
·연면적 3.5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65만원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4.5제곱미터미만	·80만원
·연면적 4.5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95만원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170만원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190만원
·연면적 10.0제곱미터	·200만원
·연면적 10.0제곱미터초과	·200만원+ 1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가산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형 가로형간판	
·연면적 2.0제곱미터미만	·30만원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35만원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40만원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9만원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55만원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65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75만원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85만원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95만원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연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170만원
·연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190만원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25.0제곱미터미만	·210만원
·연면적 2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	·230만원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35.0제곱미터미만	·245만원
·연면적 35.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미만	·260만원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 45.0제곱미터미만	·280만원
·연면적 45.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	·290만원
·연면적 50.0제곱미터	·300만원
·연면적 50.0제곱미터초과	·300만원+ 5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가산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아취광고물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40만원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50만원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60만원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70만원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70만원+ 2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가산 (100만원이하)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애드벌룬(공) 1개	·40만원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애드벌룬(공) 3개이상	·80만원+ 3개초과 1개당 5만원가산(100만원이하)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40만원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50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만원 ·70만원 ·70만원+ 2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가산 (100만원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현수막·지정게시대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가로형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공공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만원 ·30만원 ·35만원 ·35만원+ 15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가산 (50만원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비행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인비행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만원+ 1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유인비행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만원+ 1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그밖의 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1.0제곱미터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35만원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5만원
·연면적 5.0제곱미터	·50만원
·연면적 5.0제곱미터초과	·50만원+ 5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가산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 5] 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현황

허가 신고 번호	광 고 주 (옥외광고업자)		시공업소 관련정보		광 고 물 등 의 내 용					
	업 소 명 성 명 허가(신고)일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업 소 명 인허가번호 대표자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종 류 표시위치 조 명	수량	규격	광고내용	표 시 시작일	표 시 종료일

297mm×210mm 복사용지 75g/m²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장소			
<p>「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1. 신청인(기관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서			
수 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관 리 지 역
	주 소		
영 업 장 소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시설물의 명칭		위 탁 수 량	
<p>「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위탁자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p>			

210mm×297mm 인쇄용지 90g/m²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

처리기한
30 일
(소심의 : 15일)

광고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광고물 심의 신청내역	광고물 설치장소	()			
	광고물종류 (사용조명)	()	수량	신청 구분	신규, 변경
	광고물 규격(m)		구조물 총높이(m)		
	광고내용				
시공업소	성명		업소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 현황	건물명		준공년도		
	건물구조		건물용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물규모	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m)			
주변상황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심의도서 11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도서 8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검사구분	신규·연장·변경
	주소			
광고물등의 허가일자 및 번호			광고물종류 (사용조명)	()
표시장소 또는 위치			광고물등의 규격(m)	
신청일자			검사일자	
검사내용		뒷면기재(당해 광고물등에 해당되는 항목을 검사함)		
검사의견 및 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직위 :

성명 : (인)

안전도검사실시기관장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 인쇄용지 75g/m²

<뒷 면>

검 사 항 목		검사내용 및 검사기준	검 사 의 건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관 계 법 규		각종 법령 및 고시명령 등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앵커볼트·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적정여부	
접합부위	기 부 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노화·균열·변형 등 적합성 여부 및 접합상태	
		건물의 균열·파손변형 등(하중·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여부	
	구 성 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마모 등 확인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 접 상 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여부 등		
전 기 설 비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배선상태의 적정여부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의 사용여부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장애 여부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장애 여부	
기 타		강풍·폭우·폭설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이후 또는 폭발·충격 등 인위적 충격을 받은 이후의 안전성 여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등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현황

번호	안전도검사 인허가번호	광고물인 허가번호	일련번호	검사자 성명	검사자 주민번호	검사일자	검사자소속	검사결과

297mm×210mm 복사용지 75g/m²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영 업 장 소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1.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검사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지정서			
수 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검 사 지 역
	주 소		
영 업 장 소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자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p>			

210mm×297mm 인쇄용지 90g/m²

<별지 제9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일련번호	광고물종류	규격(m)	표시내용	수량	위반장소	보관장소	보관연월일	반환(귀속)연월일	담당(취급)자

297mm×210mm 복사용지 75g/m²

<별지 제10호서식>

광고물등 반환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광고물 종류			수 량	
표 시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광고물 종류			수 량	
표 시 내 용				
광고물등의 매 각 금 액		금	원정(제거한 광고물등을 매각한 경우)	

상기의 광고물등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신 고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사 유				
<p>「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신 청 인 (인)</p> <p style="margin-top: 20px;">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5,000원	

210mm×297mm 신문용지 54g/n²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신 고 번 호
	영업장소	전 화 번 호
신 고 내 용	신고구분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기간 (폐업 또는 재개업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신 고 사 유		
<p>「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합니다.</p> <p style="margin-left: 300px;">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300px;">신 고 인 (인)</p> <p>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휴업 및 폐업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반납. 재개업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단, 재개업시 7,500원)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교육의 종류			
수강 년월일		수강 장소	
수료자	성명	업소명	
	영업장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육실시기관장 인210mm×297mm 인쇄용지 90g/m²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연번	교육의종류	수강년월일	교육장소	교육 수료자			
				성명	업소명	영업장소	전화번호

297mm×210mm 복사용지 75g/m²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교육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	
불참사유	질병 또는 심신장애 (), 구속수감 중 (), 예비군·민방위훈련(), 관혼상제(), 재난재해() 그 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위탁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장소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1. 신청인(기관·단체)의 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위탁 지정서

수 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주 소			
영 업 장 소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자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

210mm×297mm 인쇄용지 90g/m²